

의안번호	제 328 호
의결년월일	1995. 12. 28. (제 40 회)

의결 사항	원안 가결
----------	----------



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년월일	1995. 12. 26.

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번호	34
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1995. 12. 26.

제 출 자 : 고 성 군 수

1. 개정이유

-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(대통령령. 14497호)에 의거 '96. 1. 1부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양곡관리특별회계 국가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관련규정을 보완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양곡관리 특별회계 국가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 : 4명
 - 6급행정 1명
 - 7급행정 1명
 - 8급행정 1명
 - 9급농업 1명

3. 본 문

- 고성군조례 제 호

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본청 : 234명

부 칙

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본 청 : <u>230명</u> 2. 의회사무기구 : 13명 3. 직속기관 : 92명 4. 사 업 소 : 18명 5. 유 면 : 288명 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본 청 : <u>234명</u>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4. (현행과 같음) 5. (현행과 같음)